

전산정보원 규정



한국항공대학교

개정 기록표

번호	개정일자	개정자 (서명)	번호	개정일자	개정자 (서명)
1	2014.4.22.		16		
2			17		
3			18		
4			19		
5			20		
6			21		
7			22		
8			23		
9			24		
10			25		
11			26		
12			27		
13			28		
14			29		
15			30		

전산정보원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항공대학교 부속 전산정보원(이하 '전산정보원'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4.22.>

제2조 (업무) 전산정보원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4.4.22.>

1. 대학 정보화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보화 장비 확보 및 전산망 구축과 운영
3. 학사 및 행정업무를 위한 개발 및 정보처리 지원
4. 교수의 연구 활동 및 학생의 실습·교육 지원
5. 교직원·학생·지역사회 정보화 교육 지원
6. 기타 정보처리에 관한 사항

제2조의2 (의사결정) 전산정보원에는 주요 의사결정 사항을 정보화추진위원회를 통하여 결정하도록 하며, 정보화추진위원회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5.1]<개정 2014.4.22.>

제 2 장 조 직

제3조 (원장) ① 전산정보원장은 전산정보원을 대표하고 전산정보원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4.4.22.>

② 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전임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4.4.22.>

제4조 (관리부장 및 팀장) ① 정보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장을 보좌하는 관리부장을 둘 수 있으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4.4.22.>

② 전산정보원에는 전산정보전략팀을 두고 팀장은 부참사(실험기좌, 사서부참사) 이상으로 보한다.<개정 2007.5.1. 2014.4.22.>

제5조 (직원) 전산정보원 운영상의 필요한 인원을 둔다.<개정 2014.4.22.>

제6조 (업무보조원) 전산정보원에서는 필요에 따라 조교·근로학생 등의 업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4.22.>

제 3 장 운영위원회 <삭제 2007.5.1>

제7조 삭제 <2007.5.1>

제8조 삭제 <2007.5.1>

제9조 삭제 <2007.5.1>

제10조 삭제 <2007.5.1>

제11조 삭제 <2007.5.1>

제 4 장 사업계획

제12조 (사업계획) 전산정보원의 중요 사업계획은 회계 년도 이전에 정보화추진위원회의 검토와 의결에 의하여 수립하며,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 될 수 있도록 한다.<개정 2007.5.1. 2014.4.22.>

제 5 장 운 영

제13조 (이용범위) 정보서비스 및 시설물 이용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 대학교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2. 학생 정보화교육 및 실습에 관한 사항
3. 전임교원의 학술연구활동에 관한 사항
4. 기타 수탁 계약 업무에 관한 사항

제14조 (이용절차) 정보서비스 및 시설물의 이용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한다.

1. 교육과정에 의한 학생 실습은 학기 전에 신청한다.
2. 학생의 연구에 필요한 사항은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신청한다.
3. 행정 정보화 개발은 해당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신청하며 전산정보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4.4.22.>
4. 외부업무·기타에 관한 사항은 전산정보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4.4.22 .>
5. 모든 신청은 전산정보원에서 정한 소정의 양식을 작성한다.<개정 2014.4.22 .>

제15조 (특별강좌) ① 전산정보원에서는 대학 교과정 이외의 사용자 교육과 대학 정보서비스 이용 교육에 관한 특별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개정 2014.4.22.>

- ② 특별강좌를 개설할 경우 강사료·재료비·기타 경비를 수강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으며, 회계는 사무처에서 관장한다.

제 6 장 부 칙

제16조 (내규) 전산정보원장은 본 규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내규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4.4.22.>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85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7년 3월 12일부터 적용한다.
8.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4월 22일부터 시행하되, 201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